

■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39] <개정 2024. 1. 5.>

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(제65조 관련)

(단위: 천원)

구분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,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
자율책정 범위	102,782 ~ 73,416	124,805 ~ 73,416

비고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
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3,416천원부터 146,830천원까지로 한다.